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안 번호	8268
----------	------

제안연월일 : 2025. 2.

제안자 : 교육위원장

주 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1.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 체계 및 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방안에 대한 감사
2. 교육부의 2025학년도 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
3. AI디지털교과서(AIDT) 검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감사

제안이유

1.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 체계 및 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방안에 대한 감사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 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체계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함.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교과용 도서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 교과용 도서의 “범위” 관련 규정 정비, “교과용 도서” 명칭의 적절성 및 대안 검토, AIDT 도입 방식의 적절성 검토 등이 있음.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중 법률로 상향해야 할 내용을 식별하고, 교과용 도서의 정의, 범위, 편찬·검정·인정 절차 등 핵심 사항의 법률 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AIDT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 자료를 포괄할 수 있는 범위 설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개정 필요성도 검토가 필요함. 디지털 시대에 맞는 용어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육 자료” 등 대안적 명칭을 검토해야 하며, AIDT를 반드시 “교과용 도서”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고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 재검토가 요구됨.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과용 도서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교과용 도서” 대신 “교육 자료”로서 AIDT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이러한 법규 체계 개선을 통해 AIDT 등 새로운

교육 자료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시대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감사가 필요함.

2. 교육부의 2025학년도 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AIDT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제기한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하려 한 점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함. 교육부는 학부모·교원 10만64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6.6%가 AIDT 도입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도입을 강행하려 했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26개 교육 시민단체가 참여한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의 반대 성명을 비롯해 다수의 교육단체들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았음. 이는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 또한, 국회에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재의요구를 추진했음. 교육부의 AIDT 도입 방식에 대해 학부모의 84.9%, 전체 응답자의 87.0%가 부정적으로 답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 AIDT가 학습 격차 해소, 문해

력 향상, 사교육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구체적 데이터와 실증 사례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오히려 집중력 저하, 디지털 기기 의존도 증가, 문해력 하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는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 충분한 검증과 논의가 부족했음을 시사함. 더불어 AIDT 활용을 위한 태블릿, 와이파이 등 학교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AIDT 활용을 위한 교사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는 교육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책을 강행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줌.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 특히 이주호 장관이 AIDT 도입을 강행하려 한 것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줌.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함.

3. AI디지털교과서(AIDT) 검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감사

교육부의 AIDT 검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함. 교육부는 AIDT 검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검정 기준, 심사위원 구성, 심사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 AIDT 개발 및 공급에 있어 소수의 대형 출판사들이 독점적 지위

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중소 출판사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할 수 있음. AIDT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검정 기준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는 다른 AIDT만의 특성을 반영한 검정 기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AIDT 검정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음. 이는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AIDT 검정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내용과 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검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음. 이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 질 향상 의무와 관련이 있음. 따라서 AIDT 검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출판사의 독점 여부를 조사하며, 검정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함.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정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를 통해 AIDT의 질적 향상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